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149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마포구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(안 제14조의3)
  - 재산세 감면을 받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 실효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
- 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」의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(안 조례 제1156호 부칙 제3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9. 10. 4. ~ 10. 24. (제출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6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 (2019.11.5.)
- 7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3(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·지정된 토지·건축물·주택(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4조의3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다만, 제2조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4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.

제4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4조의3(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·지정된 토지·건축물·주택(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가.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세무1과 전창우 (☎ 3153-8715)